# 창 녕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선람 | 기관의장 |
|---|---|
| | |

# 공 보

제697호 2024. 4. 4.(목)

## 공 고


❍ 창녕군 공고 제2024-611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창녕군 공고 제2024-628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7

❍ 창녕군 공고 제2024-63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창녕군 공고 제2024-631호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 입법예고 …… 39


| 회람 | | | | | | | | |
|---|---|---|---|---|---|---|---|---|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611호

#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창 녕 군 수

##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신규 조성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변경하고 감면대상 추가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에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3조)

다. 군수입증지 첨부조항 삭제(안 제24조)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변경(안 별표 1)

- 신규 조성 체육시설: 남지국민체육센터, 창녕반다비체육센터,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조: 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2) 팩스: 055-530-1520

3) 메일: theektm@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055-530-1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창녕군 조례 호

#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시설명 | 시설구분 | 용 도 | 기 준 | 기본 사용료 | 비 고 |
|---|---|---|---|---|---|
| 창녕공설 운동장 | 육상경기장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1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체육행사 | | 1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축구경기장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행사 | | 3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창 녕 스포츠 파 크 | 축구장 (천연잔디)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100,000 | |
| | 축구장 (인조잔디)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정규 야구장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리틀 야구장 | 체육경기 | | 1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45,000 | |
| 창녕군민 체육관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90,000 | |
| 창녕국민 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90,000 | |
| | 풋살장 | 체육경기 | 1일1회1면 1시간 | 1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25,000 | |
| 창녕반다비 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80,000 | |
| 영산국민 체육문화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80,000 | |
| 창녕군민 탁구장 | 탁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
| 창녕오리정 운동장 | 축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창녕공설 테니스장 | 실내경기장 | 체육경기 | 1일1회(1면) 4시간 | 25,000 | |
| | 실외경기장 | 체육경기이외 | | 20,000 | |

1) 육상경기장은 육상경기 트랙을 위주로 사용하는 행위로 말하고, 축구경기장은 축구경기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 징한다.

3) 전용사용자가 부대 설비 및 철거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후의 사용시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50/10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2.이용(연습사용)료

### 가. 창녕공설운동장 등 7개 체육시설

(단위: 원)

| 시설명 | 시설 구분 | 연습 종류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 창녕공설 운동장 | 육상 경기장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br>·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 | 단체연습 | | 15,000 | |
| | 축구 경기장 | 개인연습 |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창녕 스포츠 파크 | 축구 경기장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 야구 경기장 | 개인연습 |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창녕군민체육관 |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창녕공설 테니스장 | 실내 | 개인연습 | 1회1면 2시간 | 20,000 | |
| | 실외 | | | 10,000 | |
| 창녕국민 체육센터 | 실내 체육관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 풋살장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영산국민 체육문화센터 | 실내 체육관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창녕군민탁구장 |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연습 | | 15,000 | |

## 나. 창녕군립수영장 등 4개 시설

(단위: 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성인<br>(만19세이상)</th><th colspan="3">중고생<br>(만13~만18세)</th><th colspan="3">유아,초등<br>(만12세 이하)</th><th colspan="3">1회 입장요금</th></tr>
<tr><td rowspan="5">창녕군립수영장 및 남지국민체육센터</td><td rowspan="4">수영장<br>(월)</td><td colspan="3">자유수영</td><td colspan="3">자유수영</td><td colspan="3">자유수영</td><td rowspan="2">성인</td><td rowspan="2">중고생</td><td rowspan="2">유아,초등</td></tr>
<tr><td>주5회</td><td>주3회</td><td>주2회</td><td>주5회</td><td>주3회</td><td>주2회</td><td>주5회</td><td>주3회</td><td>주2회</td></tr>
<tr><td>50,000</td><td>40,000</td><td>30,000</td><td>45,000</td><td>35,000</td><td>28,000</td><td>40,000</td><td>32,000</td><td>25,000</td><td>3,000</td><td>2,000</td><td>1,500</td></tr>
<tr><td colspan="3">강습</td><td colspan="3">강습</td><td colspan="3">강습</td></tr>
<tr><td colspan="3">60,000</td><td colspan="3">55,000</td><td colspan="3">50,000</td></tr>
<tr><td>헬스장<br>(월)</td><td colspan="9">40,000</td><td>3,000</td><td>2,000</td><td>1,500</td></tr>
<tr><td rowspan="3">반다비체육센터</td><td rowspan="2">수중운동실<br>(월)</td><td>주5회</td><td>주3회</td><td>주5회</td><td>주3회</td><td>주5회</td><td>주3회</td><td>성인</td><td>중고생</td><td>유아,초등</td></tr>
<tr><td>40,000</td><td>30,000</td><td>35,000</td><td>25,000</td><td>30,000</td><td>20,000</td><td>2,500</td><td>1,500</td><td>1,000</td></tr>
<tr><td>헬스장<br>(월)</td><td colspan="6">35,000</td><td>2,500</td><td>1,500</td><td>1,000</td></tr>
<tr><td>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td><td>헬스장<br>(월)</td><td colspan="6">35,000</td><td>2,500</td><td>1,500</td><td>1,000</td></tr>
<tr><td colspan="2">사물함(월)</td><td colspan="9">3,000</td></tr>
</table>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 시설명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 수영장 | 06:00 ~ 22:00 | 09:00 ~ 18:00 | 09:00 ~ 18:00 |
| 헬스장 | 06:00 ~ 22:00 | 09:00 ~ 18:00 | - |

6. 정기휴관일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 3.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전광판 | 1일1회 1시간 | 50,000 |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야간조명 | 1일1회 3시간 | 100,000 | |
| 앰프시설 | 1일 1회 | 20,000 |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
| 냉·난방(보일러) | 1일 1회 | 기본료(30,000원)+<br>실제사용량 유류가격 | |
| 건축물의 이용<br>(매점,식당,사무실 등) | ㎡당<br>1일 1회 | 500 | |

## 4.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종류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선전또는<br>광고물의<br>게시 | 게시면적<br>1㎡당<br>월액 1등급<br>2등급 | <br><br>5,000<br>4,000 | ·1㎡미만은 1㎡로본다.<br>·15일 미만은 1/2월로 본다.<br>·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br>·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br>·2등급: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본다. |
| 애드벌룬 및<br>유사물 게양에<br>의한 행위 | 1일 1개 | 2,000 | |
| 영화 및<br>비디오 촬영 | 조기<br>주간<br>야간 | 10,000<br>20,000<br>30,000 | |

## 5.중계방송료

(단위: 원)

| 종 별 | 텔레비젼 중계 | 라디오 중계 | 녹화 또는 녹음 | 비고 |
|---|---|---|---|---|
| 기 준 | 1일 1회 | 1일 1회 | 1일 1회 | 중계방송료는<br>주체자측에서 부담 |
| 요 액 | 20,000 | 20,000 | 중계방송료의 반액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축구장, 육상 경기장 포함),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군립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오리정운동장, 야구장, 탁구장, 족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제2조(정의) ----------.<br>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 2. ~ 16. (생 략) | 2. ~ 16. (현행과 같음) |
|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br>1. (현행과 같음) |
| 1. (생 략) | 2. ---------- |
| 2. 100분의 80 감경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가. ~ 바. (생 략) |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신 설> | 3. · 4. (현행과 같음) |
| 3. · 4.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체육시설물 | 시설용도별 | 경기장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공설운동장 | 체육경기 | 육상경기장 | 1일1회 1시간 내 | 1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축구경기장 | 〃 | 25,000 | |
| | 체육행사 | 육상경기장 | 〃 | 15,000 | |
| | | 축구경기장 | 〃 | 30,000 | |
| | 체육경기이외 | 육상경기장 | 〃 | 70,000 | |
| | | 축구경기장 | 〃 | | |
| 스포츠파크 | 체육경기 | 천연잔디 | 〃 | 50,000 | |
| | | 인조잔디 | 〃 | 25,000 | |
| | 체육경기이외 | 천연잔디 | 〃 | 100,000 | |
| | | 인조잔디 | 〃 | 70,000 | |
| 군민체육관 | 체육경기 | | 1일1회 4시간 내 | 60,000 | |
| | 체육경기이외 | | 〃 | 90,000 | |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 1일1회(1면) 4시간 내 | 20,000 | |
| 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 | | 1일1회 4시간 내 | 80,000 | |
| | 체육경기이외 | | 〃 | 100,000 | |
| 탁구장 | 체육경기 | | 1일1회 4시간 내 | 60,000 | |

〈삭 제〉

[별표]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시설명 | 시설구분 | 용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창녕공설운동장 | 육상경기장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1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체육행사 | | 1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축구경기장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행사 | | 3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창녕스포츠파크 | 축구장(천연잔디)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100,000 | |
| | 축구장(인조잔디)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정규야구장 | 체육경기 |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 리틀야구장 | 체육경기 | | **1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45,000** | |
| 창녕군민체육관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90,000 | |

(단위: 원)

| 시설명 | 세부시설 | 용도 | 기 준 | 기본사용료 | 비 고 |
|---|---|---|---|---|---|
| 창녕국민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체육경기이외 | | 90,000 | |
| | 풋살장 | 체육경기 | 1일1회 1면 1시간 | 1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25,000 | |
| 창녕반다비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80,000 | |
|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50,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80,000 | |
| 창녕군민탁구장 | 탁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4시간 | 60,000 | |
| 창녕오리정운동장 | 축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1시간 | 25,000 | |
| | | 체육경기이외 | | 70,000 | |
| 창녕공설테니스장 | 실내경기장 | 체육경기 | 1일1회 (1면) 4시간 | 25,000 | |
| | 실외경기장 | 체육경기이외 | | 20,000 | |

2.이용(연습사용)료

가. **공설운동장 등 6개 체육시설** (단위: 원)

| 시설별 | | 연습 종류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 **공설 운동장** | **육상 경기장**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당 | **1,000**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br>·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 | 단체 연습 | 〃 | 2,000 | |
| **공설 운동장, 스포츠 파크** | **축구 경기장** | 개인 연습 | 〃 | **1,000** | |
| | | 단체 연습 | 〃 | 3,000 | |
| **군민체육관** | | 개인 연습 | 〃 | **1,000** | |
| | | 단체 연습 | 〃 | 10,000 | |
| **테니스장** | | 개인 연습 | 1회1면 2시간 당 | 5,000 | |
| **국민체육센터** |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당 | 1,000 | |
| | | 단체 연습 | 〃 | 15,000 | |
| **탁구장** |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당 | 1,000 | |
| | | 단체 연습 | 〃 | 10,000 | |

2.이용(연습사용)료

가. **창녕공설운동장 등 7개 시설** (단위: 원)

| 시설명 | 시설 구분 | 연습 종류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 **창녕공설 운동장** | 육상 경기장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 요액 추가 징수<br>·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 축구 경기장 | 개인 연습 |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창녕 스포츠 파크** | **축구 경기장**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 **야구 경기장** | 개인 연습 |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창녕군민 체육관** |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창녕공설 테니스장** | **실내** | 개인 연습 | 1회1면 2시간 | **20,000** | |
| | **실외** | | | **10,000** | |
| **창녕국민 체육센터** | 실내 체육관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 **풋살장**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영산국민 체육문화 센터** | **실내 체육관**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창녕군민 탁구장** | | 개인 연습 | 1회 2시간 | **5,000** | |
| | | 단체 연습 | | **15,000** | |

## 나. 군립수영장 (단위: 원)

| 구분 | 성인 (만19세이상) | | | 중·고생 (만13~만18세) | |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 | 1회 입장요금 | | |
|---|---|---|---|---|---|---|---|---|---|---|---|---|
| 수영장 (월)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성인 | 중·고생 | 유아,초등 |
| | 50,000 | 40,000 | 30,000 | 45,000 | 35,000 | 28,000 | 40,000 | 32,000 | 25,000 | 3,000 | 2,000 | 1,500 |
| 헬스장 (월) | 40,000 | | | | | | | | | 3,000 | 2,000 | 1,500 |
| 사물함 (월) | 3,000 | | | | | | | | | | | |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 시설명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 수영장 | 06:00 ~ 22:00 | **06:00 ~ 18:00** | 09:00 ~ 18:00 |
| 헬스장 | 06:00 ~ 22:00 | **06:00 ~ 18:00** | - |

6. 정기휴관일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 나. 창녕군립수영장 등 4개 시설 (단위: 원)

| 구분 | | 성인 (만19세이상) | | 중고생 (만13~만18세) |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 1회 입장요금 | | |
|---|---|---|---|---|---|---|---|---|---|---|
| **창녕군립수영장 및 남지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월) | **자유수영** | | **자유수영** | | **자유수영** | | 성인 | 중고생 | 유아,초등 |
| | | 주5회 | 주3회 | 주5회 | 주3회 | 주5회 | 주3회 | | | |
| | | 50,000 | 40,000 | 45,000 | 35,000 | 40,000 | 32,000 | 3,000 | 2,000 | 1,500 |
| | | **강습** | | **강습** | | **강습** | | | | |
| | | **60,000** | | **55,000** | | **50,000** | | | | |
| | 헬스장 (월) | 40,000 | | | | | | 3,000 | 2,000 | 1,500 |
| **창녕반다비체육센터** | **수중운동실 (월)** | **주5회** | **주3회** | **주5회** | **주3회** | **주5회** | **주3회** | **성인** | **중고생** | **유아,초등** |
| | | 40,000 | 30,000 | 35,000 | 25,000 | 30,000 | 20,000 | 2,500 | 1,500 | 1,000 |
| | **헬스장 (월)** | **35,000** | | | | | | **2,500** | **1,500** | **1,000** |
|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 **헬스장 (월)** | **35,000** | | | | | | **2,500** | **1,500** | **1,000** |
| 사물함(월) | | 3,000 | | | | | | | | |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10% 이용료를 감면함
4. 단체입장 할인: 20명 이상 10%, 50명 이상 20%
5. 사용시간

| 시설명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 수영장 | 06:00 ~ 22:00 | **09:00 ~ 18:00** | 09:00 ~ 18:00 |
| 헬스장 | 06:00 ~ 22:00 | **09:00 ~ 18:00** | - |

6. 정기휴관
   - 수영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헬스장: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 공 통: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

# 창녕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창녕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장 손전식 (☎530-1520)

#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구 분 | 체 육 시 설 종 류 |
|---|---|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628호

#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60

**3. 주요 개정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정비(안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부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정비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42조)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43조)

## 4. 관련법규

가. 「건축법」 제87조의2, 제87조의3

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의3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5.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4.(목) ~ 2024. 4. 24.(수)

##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4년 4월 24일까지 창녕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2) 팩스: 055-530-1390

3) 메일: munhj514@korea.kr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주택팀(☎ 055-530-1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창녕군 조례 제 호**

#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접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을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 · 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 · 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br>----------<br>----------<br>----------<br>----------<br>**인접 대지경계선**----------<br>----------<br>----------. |
| 1. 삭 제 | |
|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br>--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br>------ |
| ② 삭 제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br>**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

| | |
|---|---|
| |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br>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br>4.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br>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br>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신 설> |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br>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br>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br>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br>4. 그 밖에 수입금<br>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br>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 |

| | |
|---|---|
| | 영에 필요한 경비<br>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br>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br>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br>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 확인 · 검토 · 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 감독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 · 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 · 군 · 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 · 군 · 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 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 · 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 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 · 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의 규모 · 예산 · 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630호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창 녕 군 수

##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2. 개정이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별표 2)

##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행정과

2) 팩스: 055-530-1210

3) 메일: sisem7896@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530-1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창녕군 조례 제 호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3% 이내 | 28% 이내 | 3.5% 이상 | 0.5%이내 |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구분 | 연구직 | | 지도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9% 이내 | 91% 이상 |

3.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비율 | - | 100% 이내 | - | - | -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 경력관 |
|---|---|---|---|---|---|---|---|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3% 이내 | **27% 이내** | **4.5% 이상** | 0.5% 이내 |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 경력관 |
|---|---|---|---|---|---|---|---|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3% 이내 | **28% 이내** | **3.5% 이상** | 0.5% 이내 |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의 일반직공무원 비율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없음

**4. 작성자**: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손학준 (☎530-1200)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공 고

창녕군 공고 제2024-631호

#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창 녕 군 수

##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 2. 제정이유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추천 및 위촉(안 제2조)

다. 임기(안 제3조)

라. 역할(안 제4조)

마. 예우 및 실비지급(안 제5조)

바. 해촉(안 제6조)

##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28조

##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행정과

2) 팩스: 055-530-1210

3) 메일: sisem7896@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530-1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창녕군 조례 제 호**

#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및 위촉) 명예 읍장·면장은 창녕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창녕군의회 의장·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읍·면 출신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출향인
2. 그 밖에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명예 읍장·면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역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 및 인재육성장학기금, 각종 군정 시책 홍보 등
2. 해당 읍·면으로의 귀농·귀촌 홍보
3. 해당 읍·면 주요행사 참석 및 창녕군의 관광자원 홍보
4. 그 밖에 해당 읍·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1. 군민의 날 및 군 단위 행사 등의 참여 기회 제공

2.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명예 읍장·면장에게 표창 수여

② 명예 읍장·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4조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장·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명예 읍장·면장 실비 등 지급 경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4. 작성자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손학준 (☎530-1200)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